

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

(제정 1985. 11. 19.)

(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6. 12. 27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「직제규정」 제12조에 따른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3.1.>

제2조(구분) ① 연구소는 종합연구소, 특화연구소, 정책연구소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.9.2.>

② 종합연구소는 전임교원의 연구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문분류별로 설치한 연구소로서 건강과학종합연구소, 공학기술종합연구소, 문화관광종합연구소, 사회과학종합연구소, 산업경영종합연구소, 예술문화종합연구소, 인문과학종합연구소를 말한다. <개정 2017.3.1.>

③ 특화연구소는 연구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연구소로서 K-Food산업연구소, 관광외식서비스연구소, 농생명융합연구소, 문화재방재연구소, 소재응용연구소, 문화산업연구소, 의과학융합연구소, 인공지능연구소, 탄소연구소, 한국고전학연구소, 휴먼데이터융합연구소를 말한다. <개정 2017.3.1., 2017.9.1., 2018.9.1., 2019.3.1., 2019.9.1., 2020.4.14., 2021.8.20., 2021.12.29., 2022.8.31.>

④ 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국책사업 및 기타 과제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연구소를 말한다. <신설 2023.8.00>

제2장 설치

제3조(설치신청)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추진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의 명칭 및 목적 등이 기재된 설치 신청서
2. 연구소의 사업 계획서
3. 연구소 규정
4. 연구원 참여 동의서
5. 그 밖에 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

제4조(설치요건) ① 종합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문분류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, 이미 설치된 종합연구소의 학문분류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.

② 특화연구소의 경우에는 [별표 1]의 특화연구소 설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25.>

제5조(설치승인) 연구소는 본교 학술연구위원회규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

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. 다만, 정책연구소는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. <개정 2023.9.2.>

제3장 운영

제6조(구성) ① 연구소는 연구소장,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.

② 연구소는 해당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과 운영을 위해 연구인력, 연구소지원인력, 부서, 운영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③ 연구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사를 두어야 한다.

제7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8.31.>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.
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원) ①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연구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[별지 1]의 가입신청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.

③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제9조(간사) ①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연구소의 사무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10조(연구인력)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교수
2. 박사후연구원
3. 특별연구원
4. 연구조원
5. 연구보조원

제11조(연구인력의 자격 및 임용절차) ①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,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박사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③ 특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④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⑤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재학생으로서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임용한다.

제12조(연구인력의 처우 및 임기) ① 연구인력은 계약제로 임명하며,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연구인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임용 계약시 ‘의무연구업적량’을 포함시킬 수 있다.
2. 박사후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3.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4. 연구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5.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연구수행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연구소지원인력) ① 연구소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지원인력은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4조(부서) ① 연구소에는 각 연구의 특성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.

② 부서는 각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할 수 있으며, 부서장의 명칭도 달리 할 수 있다.

③ 부서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④ 부서장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삭 제 <2019.3.1.>

⑥ 삭 제 <2019.3.1.>

제16조(감사) ① 감사는 2명 이내로 구성하며,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장 연구소의 평가 및 폐지

제17조(특화연구소의 평가) ① 특화연구소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특화연구소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 <개정 2019.6.25.>

③ 특화연구소 평가결과는 [별표 3]에 따라 S, A, B, C 등급으로 분류한다.

④ 평가결과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연구소의 폐지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를 폐지한다. 다만, 정책연구소의 경우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한다. <개정 2023.9.2.>

1. 연구소의 사업이 설치목적과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특화연구소 평가결과 C등급이거나, 2회 연속 B등급인 경우
3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장 재정 및 보고

제20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간접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소 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연구소 소속 연구원 및 연구인력이 납부한 연구간접비의 일부를 해당 연구소에 이관할 수 있으며, 이관된 경비는 해당 자금의 원제공자(이는 연구과제 발주기관을 말한다)의 감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.

제21조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시기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연구소 연간 사업계획(매년 12월말)
2. 연구소 현황 및 사업결과(매년 3월말)
3. 연구소 논문집의 발행(해당 시)
4. 특화연구소 자체평가(매2년마다 3월말)
5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수시)

제22조(회의록) 연구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7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연구소와 전문연구소에 대한 조치) 이 규정 개정 전에 설치된 공동연구소와 전문연구소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「부설연구소 설치규정」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12. 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연구소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23. 9. 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특화연구소 설치요건

평가항목		설치요건	
1	참여인원	전임교원 5명	
2	최근 3년 연평균 연구간접비 납부금액	인문사회예체능계열	이공계열
		3,000만 원	5,000만 원

※ 간접비 납부금액에는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 기술료 수입금을 포함한다.

[별표 2] 특화연구소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기준	
최근 2년 연평균 연구간접비 납부금액	인문사회예체능계열	이공계열
	4,000만 원	7,000만 원

※ 간접비 납부금액에는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 기술료 수입금을 포함한다.

[별표 3] 특화연구소 평가등급 및 평가기준 충족정도

평가등급	평가기준 충족정도
S등급	[별표 2]의 평가기준 200%이상
A등급	[별표 2]의 평가기준 100% 이상 ~ 200% 미만
B등급	[별표 2]의 평가기준 80% 이상 ~ 100% 미만
C등급	[별표 2]의 평가기준 80% 미만

[별지 1] 부설연구소 가입신청서

전주대학교 () 연구소 가입 신청서

가입 신청인	성 명		
	소 속	대학	학과
	세부전공		
	연구업적평가계열		
	연락처	연구실	
		휴대전화	

위와 같이 연구소 가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

전주대학교 () 연구소장 귀하